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한 행위는 공정이용이 아니다

박경신 *

2018년 3월 27일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구글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사건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환송함. 이번 판결은 비교적 적은 양의 코드를 복제하는 행위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코드가 사용되는 매체인 기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용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변형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사실 관계

- 오라클(Oracle)은 2009년 선 마이크로시스템(Sun Microsystems)을 인수하면서 승계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Java)를 기반으로 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인 자바 API 패키지¹⁾를 개발함.
- 구글(Google)은 자바를 기반으로 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발자들에게 제공하는 안드로이드용 프로그램 개발 도구인 안드로이드 개발 키트(kit)에서 자바 API를 사용하도록 함. 자바 API 패키지는 선언 코드(declaring code)와 실행 코드(implementing code)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글은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를 복제하였으나 실행 코드는 별도로 개발함.
- 오라클은 2010년 8월 구글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소송 경과

- 2012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API는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실용적인 수단이며 API를 통해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소스 코드(source

* 아트로센터 디렉터

1) API는 운영체제와 운영체제에서 구동되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임.

code)를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바 API 패키지는 아이디어·표현 합체 이론에 의해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저작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²⁾

- 2014년 5월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와 구조·시퀀스·조직(SSO)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구글이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를 복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구글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다만 구글의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으로 환송함.³⁾
- 2014년 10월 6일 구글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함.
- 2015년 1월 연방 대법원은 미국 정부에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2015년 5월 미국 법무부는 자바 API 패키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고 자바 API에 대한 구글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연방 대법원에 제출함. 2015년 6월 연방 대법원은 구글의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함.
- 2016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⁴⁾

□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

- 2018년 3월 27일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구글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사건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환송함.⁵⁾
-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한 행위는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매우 상업적임.
 - 구글이 실행 코드를 별도로 개발하였다는 점은 변형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이 없음. 구글은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와 SSO를 그대로 복제하였을 뿐 아니라 복제한 선언 코드의 표현이나 메시지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안드로이드 내 API 패키지는 자바 플랫폼 내 API 패키지와 목적이 동일함. 구글이 컴퓨터가 아닌 휴대용 기기라는 새로운 이용 환경

2)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872 F.Supp.2d 974 (N.D. Cal. 2012).

3)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750 F.3d 1339 (Fed.Cir. 2014).

4)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2016 U.S. Dist. LEXIS 74931 (N.D. Cal. June 8, 2016)

5) Oracle America, Inc. v. Google LLC, Nos. 2017-1118, 1202 (Fed. Cir. March 27, 2018)

에 선언 코드와 API 구조를 결합시켰다는 점만으로 새로운 이용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음.

- 구글이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통해 안드로이드의 무료 이용을 허용했다는 것이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이용이 비상업적임을 의미하지는 않음.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직접 수취한 경우에만 상업성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므로 안드로이드가 아닌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는 구글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선언 코드와 SSO가 기능적 고려 사항들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이용된 저작물의 성질은 공정 이용의 전체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음.

○ 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한 행위는 질적·양적 측면에서 공정 이용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 구글이 복제한 자바 API 패키지는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질적으로 중요함.

- 구글은 11,500개의 선언 코드 라인(line)을 복제하였는데 이는 자바 언어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170개의 라인보다 훨씬 많은 양임. 또한 복제된 부분이 질적으로 중요한 경우 복제된 양은 공정 이용의 판단에 결정적이지 않음. 따라서 설사 복제된 코드 라인이 자바 코드의 아주 적은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음.

○ 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한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실질적 손해 및 잠재적 손해는 막대함.

- 휴대용 기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는 자바 SE(Standard Edition)와 직접 경쟁함. 안드로이드의 출현 이후 라이선시들은 대폭 할인된 사용료를 협상하기 위하여 안드로이드가 무료라는 사실을 이용하거나 멀티 기기 제조업체들은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으로 자바 SE를 대체하였음.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새로운 시장에 배포할지 여부와 언제, 어떤 매체 내에 배포할지, 직접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배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배타적 권리를 가짐. 따라서 스마트 폰은 자바를 위한 잠재적 시장으로 오라클이 스마트 폰 제조업체가 아니고 스마트 폰 플랫폼을 아직 구축해오고 있지 않더라도 구글의 행위가 오라클이 진입할 수도 있는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법원이 이번 판결은 해당 사안에만 국한되며 컴퓨터 코드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공정 이용 항변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아님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혁신 기업들의 이익보다는 콘텐츠 권리자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최근 법원의 경향⁶⁾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 이번 판결은 비교적 적은 양의 코드를 복제하는 행위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코드가 사용되는 매체인 기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용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변형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오라클이 약 88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든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방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따라 안드로이드의 사용료 정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계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판결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선서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거나 기생적이라고 판단하는 API 이용을 차단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판결에 대하여 구글이 전원 합의체에 의한 재심리를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요청하고 요청이 기각되는 경우 대법원에 재차 상고 허가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됨.

□ 참고 자료

- * <https://bit.ly/2GMEY6d>
- * <https://bit.ly/2qkvvlq>
- * <https://bit.ly/2HdOVcq>

6)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v. Aereo, Inc., 134 S. Ct. 2498 (2014) 및 Fox News Network, LLC v. TVEyes, Inc., 883 F.3d 169 (2d Cir. 2018) 참고.

[미국] 항소법원, 기존 히트곡과 그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김혜성 *

2018년 3월 21일 제3순회 항소법원은 기존 히트곡과 그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한 지방법원 배심원의 판단은 증거에 명백히 반하지 않고 5만 달러의 손해배상도 과하지 않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함. 이 판결은 ‘음악 스타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함으로써 모든 작곡가들을 잠재적 저작권 침해자가 되게 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음.

□ 사실 관계

- 1976년에 Marvin Gaye(이하 ‘Gaye’)는 “Got To Give It Up”이라는 노래를 녹음하였고, 이 곡은 1977년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한 후 오늘날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음.
- 1977년에 Jobete Music Company가 “Got To Give It Up”의 저작권 등록을 하고 손으로 음표와 가사를 쓴 6페이지짜리 악보를 저작권청에 등록함.
 - 이 악보는 Gaye가 녹음한 “Got To Give It Up”을 듣고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가 그린 것임.
- 이후 Gaye의 가족들이 그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상속받았음.
- 2012년 6월, Pharrell Williams(이하 ‘Williams’)와 Robin Thicke(이하 ‘Thicke’)는 “Blurred Lines”라는 노래를 작곡한 후 녹음하였고, 이 곡은 2013년에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됨.
- Gaye의 가족들이 “Blurred Lines”를 들은 후 Williams와 Thicke에게 저작권 침해 항의를 하자, Williams와 Thicke는 2013년 8월 15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판결을 받기 위해서 소를 제기함.
- 이에 Gaye 가족들도 “Blurred Lines”이 “Got To Give It Up”의 저작권을 침해한 곡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함.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지방법원의 판단

- 지방법원은 녹음물(sound recordings)의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았던 1909년 저작권법이 “Got To Give It Up”에 적용되므로 저작권청에 등록된 “Got To Give It Up”의 악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만 그 녹음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 대해 검토함.
- 지방법원은 등록된 “Got To Give It Up” 악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악기 연주 부분, 백업 보컬, 키보드 리듬 등은 제외하고 후렴구, 베이스 라인, 화음 구조, 멜로디를 비교해서 두 곡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함.
- 지방법원은 Gaye 측이 등록된 악보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만을 반영해서 편집한 녹음물을 제출할 수 있게 함.
- 그러나 지방법원은 “Got To Give It Up” 등록 악보에는 없는 타악기 연주, 백업 보컬, 키보드 리듬 등이 포함되어 있는 판매용 음반 녹음물을 재생해서 비교하지는 않음.
- 지방법원은 2015년 3월 10일 Williams와 Thicke가 Gay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고, Gaye 측에 약 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앞으로 얻게 될 이용료 수입의 5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 제3순회 항소법원의 판단

- 2018년 3월 21일 제3순회 항소법원은 문제된 두 곡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한 지방법원 배심원의 판단은 증거에 명백히 반하지 않고 5만 달러의 손해배상이 과하지 않다고 보아 Williams와 Thicke가 Gay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함¹⁾.
- 항소법원은 Gaye의 “Got To Give It Up”에 대한 저작권은 약한 정도의 보호만을 받는다는 Williams와 Thicke의 주장을 배척함.
 -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제한적인 경우(예: 하얀 캔버스 위에 빨간 탱탱볼을 칠하는 것)에는 약한 정도의 저작권 보호만이 인정되어 두 저작물이 동일한 정도에 이르러야 저작권 침해를 인정되는 반면에, 그 표현 방법이 다양한 경우(예: 외계인의 공격을 다룬 영화를 만드는 것)에는 저작권이 두텁게 보호되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 음악저작물 작곡의 경우, 표현 방법이 제한적이지 않아 저작권이 두텁게 보호되므로 두

1) Williams v. Gaye, 2018 WL 1403577 (9th Cir. Mar. 21, 2018).

곡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음.

- Williams와 Thicke은 지방법원이 Gaye 측의 전문가증인으로 하여금 “Got To Give It Up” 중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소들에 기초해 증언하게 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법원은 등록 악보에는 없는 타악기 연주, 백업 보컬, 키보드 리듬 등이 포함되어 있는 판매용 음반 녹음물을 재생해서 비교하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등록된 악보에 기초해서 증언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음.
- 배심원은 “Got To Give It Up”과 유사한 면이 있는 “Blurred Lines”의 거의 모든 마디를 확인하고, 외부적 테스트(extrinsic test)로 두 곡의 특징적인 악구, 후렴구, 베이스 멜로디 등을 비교한 Gaye 측 전문가증인의 증언에 기초해 판단한 것이므로 증거에 명백히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지방법원이 실제로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받게 될 이용료 수입의 50%도 지급하도록 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
- 그러나 반대의견은 두 곡의 멜로디, 화성, 리듬이 유사하지 않음에도 다수의견이 두 곡의 비교를 거부한 채 유례없이 ‘음악 스타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함으로써 모든 작곡가들을 잠재적 저작권 침해자가 되게 한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함.
-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이 판결이 음악 스타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

□ 평가

- 이 판결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인정 기준을 확인한 것임.
- 이 판결로 인하여 작곡가들은 기존 음악저작물로부터 영감을 받아 창작하는 경우에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커져 결국은 창작을 위축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참고 자료

- * <https://bit.ly/2GNlcGV>
- * <https://bit.ly/2GNFtfy>
- * <https://bit.ly/2ua0GeH>
- * <https://bit.ly/2uChsDg>

[EU]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 인터넷 상 불법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다.

최푸름 *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인터넷에 만연한 불법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함. 이 권고안은 모든 종류의 콘텐츠, 다시 말해 테러 관련 혹은 폭력적인 콘텐츠는 물론이고 저작권 침해와 위조 상품 관련 콘텐츠에까지 적용됨. 또한, 콘텐츠 서비스 제공 업체와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취해야 할 일련의 운영 조치를 포함함. 유럽 위원회는 해당 권고안 발표 후, 불법 콘텐츠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신속하게 사전 예방적으로 탐지 및 제거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한다고 발표함.

□ 배경

- 유럽 연합은 온라인 상의 불법 콘텐츠에 대해 부분별 혹은 수평적 관점에서 대응해 왔음. 구속력 있는 조치와 없는 조치 모두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단속해 왔음.
- 서비스 제공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불법 콘텐츠 단절 노력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온라인 상에는 불법 콘텐츠가 만연하며, 이러한 상황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안과 디지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2017년 9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 조치를 포함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됨.
- 2018년 3월,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인터넷 불법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재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함. 이 권고안은 불법 콘텐츠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음. 또한, 회원 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인터넷 상 투명성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제시함.
- 저작물 중 불법 콘텐츠에 해당하는 것은 회원국 국내의 지식재산권법을 어기는 경우, 혹은 유럽 연합 정보 사회 지침과 같은 유럽 전체를 관장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어기는 경우임.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내용

-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통지와 삭제 조치 절차: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불법 콘텐츠 신고를 위해 투명하고 간편한 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신고자를 위한 신속한 절차 또한 마련하여야 함.
- 효율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는 도구와 기술: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에 접근하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여 효율적인 제재를 하여야 함. 특히 저작권 침해나 위조 상품, 테러나 아동 학대 관련 콘텐츠를 미리 탐지하여 제거하는 사전 예방적인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다 강력한 보호: 불법 콘텐츠 삭제 시, 인터넷 업체는 정확한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불법 콘텐츠가 아닌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를 차단하여야 함. 이는 유럽의 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 그리고 데이터 보호 규칙에 따름.
- 서비스 제공 업체와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만약 불법 콘텐츠가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증거가 있거나 의심이 들면, 업체들은 즉시 이 사실을 법 집행 기관에 알려야 함. 또한 회원국들은 이에 따른 적절한 법적 의무를 제정하도록 장려됨.

□ 평가 및 전망

- 온라인 상 불법 콘텐츠를 제재하기 위한 이번 권고안은 불법 저작물 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 테러, 보안 위협, 마약 그리고 소아성애 콘텐츠까지 삭제하기 위한 방침임. 흥미로운 점은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사법 당국이 서비스 제공 업체와 협력하여 불법 콘텐츠를 제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는 것임.
- 유럽 연합은 특히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의 단일 시장을 구현하려고 노력해왔으나 해당 분야에 대한 논의는 회원국 사이에서도 진전이 되지 않는 부분임.¹⁾ 이 권고안이 발표된 후 추이를 보아 회원국 내의 국내법을 유럽 기준에 맞추기 위한 관련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 연합이 추구해왔던 디지털 단일 시장 (Digital Single Market)의 구현 속도를 앞당길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 <https://goo.gl/eBK8z8>
- * <https://goo.gl/we2oYy>
- * <https://goo.gl/tZCMy9>

1) European Commission, '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Programme (REFIT) and the 10 priorities of the Commission' COM (2017) 12 final

[EU] 회원국 간 온라인상 거래를 제한하는 지리적 차단과 가격차별을 금지하는 규칙이 2018년 말부터 시행된다

박경신 *

사업자가 소비자의 국적, 거주지나 설립지에 근거하여 부당한 지리적 차단을 하거나 다른 유형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이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 저작물への 접근 또는 저작물의 사용이거나 무형적 형태의 저작물 판매인 경우는 동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운로드가 가능한 음악, 전자책,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배경

- 2015년 5월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각 저작권법 간 조화를 도모하고 지리적 차단과 같은 온라인 거래에 대한 장벽을 폐지함으로써, 회원국 간 국경 장벽을 없애는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함.
- 이에 따라 2015년 12월 유럽 위원회는 ‘콘텐츠에 관한 접근 보장을 EU 전체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구체적 실천 계획인 ‘현대적인, 보다 유럽적인 저작권 체계를 향하여 (Towards a modern, mor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를 발표함.
- 이러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유럽 위원회는 EU 전역의 온라인상 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차단 금지를 포함한 조치들을 제안함.
- 2017년 11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회원국 간의 온라인상 거래를 제한하는 지리적 차단을 금지하는 규칙안에 합의함.
- 2018년 2월 6일 유럽 의회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국적, 거주지나 설립지에 근거하여 부당한 지리적 차단을 하거나 다른 유형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안을 승인하였으며, 2018년 2월 27일 유럽 이사회는 이를 승인함.

* 아트로센터 디렉터

- 동 규칙¹⁾은 2018년 3월 2일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되었으며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규칙의 주요 내용

- 동 규칙의 목적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의 국적, 거주지나 설립지에 근거한 부당한 지리적 차단과 다른 유형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역내 시장의 적절한 운용에 기여하는 것임.
- 사업자는 소비자의 국적이나 거주지, 설립지를 근거로 기술적 조치나 기타 조치를 통하여 사업자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최초로 접근을 요청했던 온라인 인터페이스와 상이한 인터페이스 버전으로 소비자를 리다이렉트(redirect) 시킬 수 없음.
 - 다만 이러한 차단이나 제한 또는 이동이 유럽연합법이나 회원국의 국내법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되며, 이러한 차단이나 제한이 이루어지거나 상이한 온라인 인터페이스로 소비자를 리다이렉트 시키는 경우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시 가격을 비롯한 일반적 거래 조건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됨.
 - 사업자가 인도하기로 청약한 회원국으로 인도되거나 소비자와 합의된 장소에서 수취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사업자가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원국 내 물리적 시설에서 전자적 형태 이외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가격 차별과 달리 가격 차이는 금지되지 않음. 따라서 사업자는 가격, 판매시점 등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한 일반적 거래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 내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도 있음.
- 판매자는 제품을 인도하기로 청약한 회원국 이외의 국가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음.

1) Regulation (EU) 2018/3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February 2018 on addressing unjustified geo-blocking and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based on customers' nationality, place of residence or place of establishment with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2006/2004 and (EU) 2017/2394 and Directive 2009/22/EC

- 사업자는 소비자의 국적, 거주지, 설립지, 결제계좌 소재지, 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설립지, 결제 수단의 발급지를 근거로 특정 거래를 거부하거나 상이한 결제 수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됨. 다만 지급 거래가 전자적 지급 거래이고, 강력한 소비자 인증이 이용가능하며, 지급 거래가 사업자가 인정하는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의무가 부과됨.
-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 무형적 형태의 저작물 판매를 비롯한 저작물예의 접근 또는 저작물의 사용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아울러 역내 시장 서비스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 2006/123/EC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금융, 시청각, 운송,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동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후 유럽 위원회는 역내 시장에 대한 동 규칙의 영향을 평가하며, 특히 다운로드가 가능한 음악, 전자책,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와 같은 콘텐츠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 규칙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영향 평가에 포함함.

□ 평가 및 전망

- 동 규칙은 국적이나 거주지를 근거로 서비스 이용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내 시장 서비스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 2006/123/EC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웨어하우징(data warehousing) 서비스, 웹사이트 호스팅, 방화벽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동 규칙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다운로드가 가능한 음악, 전자책,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규칙의 시행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됨.
- 유럽 이사회가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동 규칙 시행에 따라 유럽연합의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 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 <https://bit.ly/2GP8d3I>
- * <https://bit.ly/2GqIBuq>
- * <https://bit.ly/2E6KRGb>

[독일] 법원, 공개 무선 랜 제공자는 TMG 개정 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 여전히 책임을 진다

박희영 *

통신미디어서비스법(TMG)이 개정되어 공개 무선 랜 제공자도 인터넷접속제공자에 해당되어 간접책임을 지지 않게 됨. 하지만 법원은 TMG 개정 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 무선 랜 제공자에게 여전히 방해자책임(간접책임)을 인정하여 경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조명 및 음향기기를 판매 및 대여하는 사업자인 파덴(Mc Fadden)은 자신의 고객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공개 무선 랜(WLAN 또는 와이 파이 망)을 무료로 제공함.
- 이 무선 랜을 통하여 소니 뮤직(Sony Musik)의 음반이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다운로드에 제공됨.
- 이 음반의 저작권접권자인 소니 뮤직은 무선랜 제공자인 파덴에게 전송권(공중접근권) 침해를 경고하고 이러한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경고비용의 보상을 요구함.
- 파덴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고 공개 무선랜 이용자들이 행한 저작권 침해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또한, 무선랜 제공자는 전자상거래지침(2000/31/EC) 제12조를 독일 국내법으로 이행한 TMG 제8조의 인터넷접속제공자에 해당되므로 자신은 면책된다고 주장함.
- 파덴은 이러한 이유로 소니 뮤직이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

- 뮌헨 지방법원은 파덴이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아서 공동불법행위자나 방조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무선 랜을 운영하였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기 때문에 방해자책임(간접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하지만, 공개 무선랜 제공자는 전자상거래지침 제12조의 인터넷접속제공자로서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을 요청함.

- 사법재판소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무선 랜 제공자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러한 침해를 중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결함.

□ 지방법원의 판결

- 지방법원은 2017년 4월 20일 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방해자책임(간접책임)을 인정하여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경고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함.¹⁾
-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광고하기 위해서 무선 랜을 공중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자는 지침 제12조의 인터넷접속제공자에 해당되어 면책되지만, 권리자가 무선 랜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도록 관청이나 법원에 명령을 청구하는 것(금지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음.
- 이 금지청구권에 의해서 무선 랜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거나 예방할 책임이 있음. 특히, 무선 랜 제공자는 이용자의 침해를 중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로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함.

□ 통신미디어서비스법 개정

- 인터넷접속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나 방해자책임(간접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선 랜 제공자도 인터넷접속제공자에 해당된다는 TMG가 개정되어 2017년 10월 13일부터 발효됨.
- 개정법 제8조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선 랜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침해제거 또는 금지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에 지출된 비용뿐 아니라 소송 전 침해 경고 시에 권리자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 등도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 또한 무선 랜 제공자는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거나 또는 비밀번호의 입력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이러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할 수는 있음.

1) LG München I, Urteil vom 20.04.2017 - 7 O 14719/12.

□ 고등법원 판결

- 뮌헨고등법원은 2018년 3월 15일 무선 랜 제공자는 TMG의 개정 규정에 따라서 인터넷 접속제공자에 포함되므로 제공자에게 더 이상 방해자책임(간접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금지청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청구될 수 없다고 판결함.²⁾
- 하지만 TMG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무선 랜 제공자는 여전히 금지청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함.
- 무선 랜 제공자가 TMG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파덴에게 연방대법원의 상고를 허용함.

□ 평가 및 전망

- 호텔이나 카페 등 무선 랜 제공자는 인터넷접속제공자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용자의 침해로 권리자가 요구한 경고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됨. TMG의 개정으로 이제 경고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이번 판결도 이를 확인함으로써 무선 랜 제공자의 법적안정성이 확보됨.
- 하지만 개정 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해자책임(간접책임)이 인정되어 경고 비용을 부담해야 됨.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최고 법원의 판결이 주목됨.

□ 참고 자료

- * <https://bit.ly/2GwcU3D>
- * <https://bit.ly/2HeqNUJ>

2) OLG München, Urteil vom 15.03.2018 - 6 U 1741/17.

[호주] 정부, 공정이용 도입 등 저작권법 현대화 정책과 관련한 자문 보고서 발표

유현우 *

호주 정부는 기술의 발전과 CPTPP 참여에 따라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최근,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법 현대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자문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정이용과 같은 유연한 저작권 예외조항에 대한 전문가 및 공중의 의견을 요청하였음.

□ 배경

- 호주 정부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에 따라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콘텐츠를 제작, 배포 및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이에, 호주 정부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창작자, 사용자, 배포자 모두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저작권 관련 정책과 법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자문 보고서 개요

- 호주 통신문화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the Arts)는 2018년 3월 19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저작권법 현대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자문 보고서인 “저작권 현대화 자문 보고서(The Copyright modernization consultation paper)”를 발표하였음.
 - 동 보고서에서는 공정이용 조항과 같은 유연한 저작권 예외 조항의 도입, 고아저작물에 대한 접근 등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음.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주요 내용

- 현재 호주에서는 논평 또는 비평, 패러디 내지 풍자, 뉴스 보도, 조사 및 연구 등의 목적인 경우,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공정거래(fair dealing)¹⁾ 조항이 운영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이외에 비상업적인 사적 이용(non-commercial private use), 부수적 또는 기술적 이용(incidental or technical use),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의 이용, 특정한 목적의 교육적인 이용,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정부의 이용 등을 공정이용 조항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동 자문 보고서에서는 저작권 예외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들이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되었음.
 - 이용자들에게 문서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 합법적으로 취득한 음악을 개인 및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장비를 통해 전송하길 원하는 음악구매자
 - 수업 보충교재(course pack)²⁾의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사적이용(personal use) 이외의 용도로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대학
 - 백업 복사본을 만들기 원하는 소프트웨어 구매자
- 통신문화부는 저작권 예외 조항으로서 공정 이용 조항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공정거래 조항에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전자의 방안을 위해서는 포괄적 일반 조항으로서의 공정이용 조항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요구되고, 후자의 방안을 위해서도 통신문화부 장관이 현재의 공정거래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동 자문보고서의 발표와 함께 호주 정부는 공정이용과 같은 유연한 저작권 예외조항의 이행에 대한 전문가 및 공중의 의견을 요청하였음.

1) 공정거래(fair-dealing)란 용어는 공정취급, 공정이용 등의 용어로도 사용 및 불리어지고 있으며, 공정이용(fair use)의 개념과 유사해 보이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님. 공정거래(fair-dealing)는 이른바 '제한적 일반조항'으로서 법 조문에 나열되어 있는 구체적인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공정거래(fair-dealing)의 개념은 18세기 영국의 법정에서 처음 생성된 이래로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왔으며 1911년에 성문화되었음. 이후 영국의 식민지였던 오늘날의 영연방이라 불리는 나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호주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아 저작권법에 공정거래(fair-dealing)조항을 도입하였음. 유현우, "[캐나다] 연방법원, 요크대학교의 저작권과 관련한 내부 지침은 '공정 거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함", 저작권동향 2017년 제1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2) 학습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복사 문서 또는 기타 수업 자료 세트 출처 -<https://en.wiktionary.org/wiki/coursepack>

- 통신문화부는 올해 6월 4일까지 공정이용 등 저작권 현대화 이슈와 관련한 의견들을 수렴할 계획임.

□ 평가

- 호주 정부는 지난해 8월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2015년 8월에 착수하여 2016년 9월 23일에 호주 정부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지식재산 배치’보고서³⁾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연기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자문 보고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는 2016년 생산성위원회가 호주 정부에 권고했던 지리적 차단 기술(geo-blocking technology) 우회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저작권법 개정 등의 권장사항을 완전히 지지하지는 않고 있음.
- 호주 정부는 기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ISP 이외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검색 엔진, 온라인 게시판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들도 면책조항(safe harbour provisions)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면책조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원칙적(in principle)으로 지지하고 있음.
- 호주의 상원위원회(Senate committee)도 최근 저작권 면책조항의 대상을 문화, 교육, 장애와 관련한 단체 및 기관 등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한편 지난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호주를 비롯한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2019년 초에 공식 발효를 목표로 서명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는 공정이용 및 면책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이전의 TPP 협정 지식재산권에 관한 Section H에서도 회원국들이 공정이용 및 면책조항 모두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었음⁴⁾.
- 호주 정부는 국내 비준 등을 통해서 2018년 말까지 CPTPP의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광범위한 면책조항의 도입이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TPP협정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의견이 호주 디지털 연합 (the Australian Digital Alliance)과 저작권 자문단(Copyright Advisory Group) 등으로부터 제기된 바 있음⁵⁾.

3) 박경신, “[호주] 생산성 위원회,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간”, 저작권동향 2017년 제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4) 유현우, “[기타] 호주 산업계, TPP 협정의 저작권 조항과 자국법의 충돌 우려”,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27권, 한국저작권보호원, 2017년.

5) 유현우, “[기타] 호주 산업계, TPP 협정의 저작권 조항과 자국법의 충돌 우려”,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27권, 한국저작권보호원, 2017년.

□ 참고 자료

- * <https://zd.net/2Gwex2>
- * <https://zd.net/2EgrVnv>
- * <https://bit.ly/2I6Asvl>

[일본] 정부,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 검토

권용수 *

최근 일본에서는 만화 해적판 사이트 ‘만화마을’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 이에 일본 정부는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이트 블로킹을 포함한 모든 대책의 가능성을 검토함.

□ 사이트 블로킹 검토

- 최근 일본에서는 만화나 잡지를 무료로 읽을 수 있는 해적판 사이트 ‘만화마을’(漫畵村)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쿨 재팬을 대표하는 중요한 콘텐츠인데, 만화가나 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해적판 사이트로 인해 저하되면서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음.
 - 만화마을의 방문자수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3개월 간 4억 5천만 명을 기록하였고, 2018년 2월에만 1억 6천만 명을 넘음. 연령별 이용자를 보면 10대 이용자가 가장 많았음.
- 이에 만화 업계는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위기감을 표명하였고, 쿨 재팬을 추진하는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음.
- 2018년 3월 19일 스가 요시히데 내각 관방 장관은 정부가 만화나 애니메이션 해적판 사이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이트 블로킹¹⁾을 포함한 모든 대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

□ 만화 해적판 사이트를 둘러싼 법적 쟁점

- 인터넷 보급 전에는 대량의 해적판을 제조하여 유통시킬 수 있는 주체가 업체 정도에 불과하였음. 그 때문에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는 자유이고 그 이외의 복제만을 규제한다²⁾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을 가지고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었음.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1) 사이트 블로킹은 아동 음란물이나 금지 약물처럼 인터넷 이용자의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서비스 제공업자 측이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함.

2)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 그러나 인터넷의 보급 이후에는 개인의 복제와 배포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역시 규제할 필요성이 생겼음.
- 2009년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사적사용의 목적일지라도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규정함(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2항).
 - 다만 일반적으로 1건 단위의 손해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실익이 없음. 그 때문에 이 규정은 사적복제도 위법이라는 선언적 효과를 지닌 규정으로 평가받았음.
- 2009년 개정 저작권법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성으로부터 2012년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불법 업로드된 음악 또는 영상 저작물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일본 저작권법 제119조 제3항).
- 그러나 2012년 개정 저작권법의 규제 대상은 ‘녹음’과 ‘녹화’된 것 즉, 음악 및 영상 저작물에 한함. 만화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만화 해적판 사이트의 경우 결국 업자를 단속하는 것이 관건임.
 - 음악 및 영상 저작물과 달리 만화는 다운로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보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을 불법으로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음.

□ 해적판 사이트 단속의 한계 및 사이트 블로킹의 필요성

- 일본 내 해적판 사이트는 운영자를 통해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관계 당국이 직접 단속을 실시할 수 있음.
- 그러나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해적판 사이트는 일본 국내법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파일 삭제가 불가능하고,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그 처리 속도가 느리거나 아무런 대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음.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악질적인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해적판 사이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애초에 차단하는 사이트 블로킹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사이트 블로킹에 대해서는 일본 헌법의 ‘통신의 비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미 아동 음란물 사이트 블로킹이 도입된 상태임.
 - 2010년 아동 음란물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 블로킹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법 해석에서는 사이트 블로킹을 하는 것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이지만 위법성 조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이트 블로킹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사이트 블로킹을 도입할 경우,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의 접속까지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파일까지 차단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평가 및 동향

- 해적판 사이트 문제는 음악이나 영상 분야에 한해 어느 정도 해소된 측면이 있지만,³⁾ 만화 분야의 경우 대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은 저작권 보호의 관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정부는 관계 부처와 연계하여 조속히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초당파 의원연맹 ‘만화 의원연맹’(MANGA議連) 역시 해적판 사이트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만화 문화를 쇠퇴시키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조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함.

□ 참고 자료

- * <http://nlab.itmedia.co.jp/nl/articles/1803/20/news071.html>
- * <http://realsound.jp/tech/2018/03/post-176647.html>
-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320-00000377-oric-ent>
- * www.geekpage.jp/blog/?id=2015/7/13/1
- * www.appps.jp/177305/

3) 다만 음악이나 영화 해적판 사이트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은 법 규제 강화의 영향도 있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의 보급 등 업계 구조가 변화된 영향이 큼.

[실내 인테리어 홍보용 사진의 저작물성]

□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가합53729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가구제조 도소매업 및 실내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가구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임.
- 원고는 2011. 1. 27.경 광고물 인쇄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A와 가구 이미지 사진촬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는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카탈로그용 사진을 촬영하여 왔는데, 2014. 1. 22.경 가구용 카탈로그 제작을 위해 불박이 가구장 내부나 주변에 의류, 수납함, 옷걸이 등 각종 소품을 배치한 후 사진을 촬영함
- 한편, 피고는 제품 홍보를 위해 제작한 ‘C’ 카탈로그에는 불박이 가구장 내부 사진이 게재되어 있음

□ 원고 주장 요지

- 이 사건 사진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로서 피고가 제작한 제품 홍보용 카탈로그 C 자료집에 게재된 사진은 원고의 위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임.
- 위 주장과 선택적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피고 주장 요지

- 이 사건 사진은 시스템가구를 판매하기 위해 홍보용으로 촬영된 것에 불과하고,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이어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진에 등장하는 시스템가구를 제작한 업체로부터 이 사건 사진의 이용허락을 받았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판단

○ 이 사건 사진의 저작물성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됨
- 이 사건 사진은 원고의 불박이가구의 판매광고용 사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가구제품 자체만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사진촬영기술을 이용한 사진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가구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제품의 소개와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구제품과 각종 소품, 배경 등을 독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한 다음에 촬영한 것으로 피사체인 가구제품과 소품의 배치, 배경과 구도의 설정 등에 촬영자만의 발상과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은 촬영자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진저작물에 해당함.

○ 피고의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 원고의 이 사건 사진과 피고가 카탈로그에 게재한 사진을 서로 대비·비교해보면, 피고의 사진은 이 사건 사진의 주변 부분을 잘라내고 사진의 좌우를 바꾼 후 색조의 변화만을 가한 것임. 이는 이 사건 사진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단순한 개변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가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에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단순한 개변에 그친 사진을 게재하여 출판한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함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사진에 등장하는 불박이가구의 제작업체인 D로부터 이 사건 사진의 이용허락을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자는 저작재산권자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진에 관한 저작재산권자는 A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원고일 뿐이고, D는 단지 이 사건 사진에 등장한 가구를 제공한 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